

Directive of the EU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EU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

Writer

윤미선
모니터링 전문가

배하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연구원

Contents

- I. 개요
- II.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1. 포장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제3조)
 - 2. 포장재 재사용 증진(제5조)
 - 3. 기타 개정사항
- III. 산업 영향

※ 48쪽부터 51쪽까지 기재되는 'EU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 관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 전제합니다.

I. 개요

2018년 7월 4일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이하 '포장재 지침')의 개정이 발효되었다(Directive (EU) 2018/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이 지침은 EU순환경제전환정책에 따라 포장폐기물 생성 방지 및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EU 폐기물 지침 및 기존 포장재 지침에 공통으로 사용된 폐기물 관련 용어 및 정의를 일치시켰다.

또한 포장폐기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보증금환불제도, 포장재생산자책임제도, 재사용포장재수거제도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자국법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포장재 지침에 규정된 소재별 2030년 재생, 재활용 목표를 강화했다.

다음에 EU 포장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1. 포장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제3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reusable packaging)', '합성포장재(composite packaging)'의 정의를 신규 추가했다.

[표 1] EU 포장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내용(Directive 2018/852)
(제1조) 목적 : 개정 목적 명확화	●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 명기
(제3조) 정의 : 주요 용어 정의 수정, 삭제 및 신규 추가	● (수정) 포장폐기물 정의 준용 조항을 폐기물 지침 제3조(Article 3 of Directive 2008/98/EC)로 변경 ● (삭제) CD케이스, 화분 등의 포장재 예시 ● (추가) 재사용 포장재, 복합 포장재 정의, 폐기물, 폐기물 관리, 수거, 분리수거
(제4조) 예방 : 보상체계 등의 근거조항 추가	● (추가) 생산자책임제도를 통한 보상체계, 소비자 및 환경단체와의 협의 ● (삭제) 신규 포장재 적용 조치 마련에 관한 위원회 의무(3항)
(제5조) 재사용 : 재사용 관련 내용 전면 수정	● (추가) 재사용 증진을 위한 보증금반환체계, 정량적, 정성적 목표의 설정, 경제적 보상체계 사용, 재사용 포장재 최소비율 설정 등의 조치 마련 근거
(제6조) 재생 및 재활용 : 재활용 목표 추가	● (추가) 2025년까지의 전체 포장 폐기물 및 소재별 재활용 목표 설정
(제6조 a조 신설) 목표 달성 측정방법	● 포장폐기물 중량산출방법 및 시기 설정
(제6조 b조 신설) 조기 경보	● 매 3년마다 국가별 목표치 달성 경과보고서 제출
(제7조) 반환, 수거 및 재생 시스템 : 생산자책임제도 수립 근거조항 추가	● (추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2024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제도 수립을 의무화
(부속서 III)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	● (수정) '금속'을 '철금속'과 '알루미늄'으로 분리 ● (수정) '포장재 사용량'을 '포장재 최초출시량'으로, '재사용된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대체

다음 용어의 정의를 폐기물 지침(Directive 2008/98/EC) 상의 정의와 일치시켰다. '폐기물(waste)',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수거(collection)', '분리수거(separate collection)', '예방

(prevention)', '재사용(reuse)', '처리(treatment)', '재생(recovery)', '재활용(recycling)', '폐기(disposal)',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등이 해당된다.

2. 포장재 재사용 증진 (제5조)

식품 위생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EU 회원국은 판매되는 포장재의 재사용을 및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재사용하는 시스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보증금반환제도 이용
-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 설정
- 경제적 인센티브 이용
- 각 포장재 배출경로에서 연간 출시되는 포장재의 재사용 가능한 최소비율 설정

또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각 회원국이 동일한 조건에서 재사용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 31일까지 자료 산출, 검증, 보고 및 목표산정기준에 관한 이행 법령을 채택하도록 했다. 동시에 유럽위원회는 포장재 재사용에 관한 정량적 목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표 2] 신규 추가된 주요 용어 정의

주요 용어	정의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reusable packaging)	● 제품 전 과정의 다양한 경로와 순환을 통해 만들어진 용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재사용되거나 재충전됨으로써 달성할 것으로 인지, 설계 및 시장 출시된 포장재(packaging which has been conceived, designed and placed on the market to accomplish within its lifecycle multiple trips or rotations by being refilled or reused for the same purpose for which it was conceived)
합성포장재 (composite packaging)	● 채워지거나 저장되거나 운반되거나 비워질 수 있는, 내부 용기와 외부 덮개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 유닛을 형성하며, 손으로 분리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재질이 2개 이상의 층으로 만들어진 포장재(packaging made of two or more layers of different materials which cannot be separated by hand and form a single integral unit, consisting of an inner receptacle and an outer enclosure, that it is filled, stored, transported and emptied as such)

[표 3] 포장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 목표 및 준수기한

포장폐기물 종류	목표 재활용률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모든 포장폐기물	65%	70%
플라스틱	50%	55%
목재	25%	30%
철금속	70%	80%
알루미늄	50%	60%
유리	70%	75%
종이 및 판지	75%	85%

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U는 포장폐기물 및 포장폐기물에 함유된 특정 소재별 재활용 목표를 [표 3]과 같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 기타 개정사항

(1) 포장폐기물 반환, 수거 및 재생시스템 구축(제7조)

각 회원국은 관련 분야의 경제적 주체 및 관계 기준의 참여 하에 다음 2가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소비자, 다른 최종 사용자 또는 폐기물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용된 포장재 및/또는 포장폐기물의 반환 및 수거, 두 번째는 수거된 포장재 및/또는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포함한 재사용 또는 재생 등이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 회원국은 폐기물 지침(2008/98/EC) 제8조 및 제8조 (a)조에 따라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생산자책임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 포장재의 재사용, 재생, 재활용 가능한 특성 및 구성에 관한 필수 요건(제9조 및 부속서II)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위원회는 재사용 디자인 향상, 고품질 재활용 촉진, 지침의 집행력 강화의 관점에서 필수 요건의 보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분해성 포장재 (biogradable packaging)로 간주되지 않는다.

(3)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부속서III)

‘금속(Metal)’을 ‘철금속(Ferrous metal)’과 ‘알루미늄(Aluminium)’으로 구분했다. 또한 ‘소비된 포장재 톤수(Tonnage of packaging

consumed)’를 ‘최초 출시된 포장재 톤수(Tonnage of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for the first time)’로 대체한다. 나아가 ‘재사용된 포장재(Packaging reused)’를 ‘재사용가능한 포장재(Reusable packaging)’로 대체하고, ‘재사용가능한 판매 포장재(Reusable sales packaging)’의 톤수와 비율을 추가했다.

III. 산업 영향

EU 포장재 지침 개정에 따른 포장폐기물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수립


해야 한다. 현재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국가가 EPR제도를 도입했으며, 국가별 포장폐기물 대상과 생산자 책임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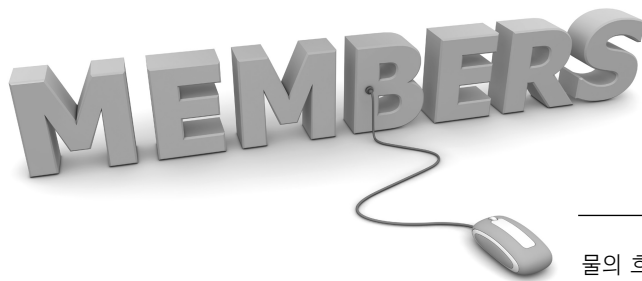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생산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생산자가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영국과 동일하지만 가정용 포장폐기물의 경우, 일부 생산자가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생산자 단체가 지자체에게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생산자

가 회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포장폐기물 관리 체계에 관한 국가 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도 반영되어 있어 선도적 관리체도를 갖춘 국가를 상호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의 법률 개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19년 1월 1일 실폐장재법(VerpackG)을 발효해 포장재를 유통하는 자가 포장재를 폐기처분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온라인 유통 포함)에게도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